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5. 26 선고 2022가단1402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담당변호사 조세형

피 고 1. B
2. C
변 론 종 결 2023. 4. 21.
판 결 선 고 2023. 5. 26.

주 문

-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 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N

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,110,1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,110,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E은 2016. 2. 5. D에게 5,000,000원을 이자 연 29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 위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은 2021. 2. 18. 원고에게 양도되었고, 2021. 3. 10. D에게 위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.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(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279540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1. 4. 'D는 원고에게 4,663,482원 및 그 중 3,746,211원에 대하여 2021. 10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1. 11. 23. 확정되었다.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22. 8. 21. 기준 6,110,158원이다.

나. D는 2018. 10. 1. F, G에게 사천시 H 대 257㎡ 및 그 지상 주택(이하 'H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하였고, 2018. 9. 28. 및 2018. 10. 1. F, G으로부터 35,000,000원을 지급받았는데, 2018. 10. 4. 피고 B에게 20,000,000원을 지급(이하 '제1지급'이라 한다)하였고, 피고 C에게 2018. 10. 4. 15,000,000원, 2018. 10. 8. 15,000,000원을 각 지급(이하 '제2지급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10호증, 을 제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한 제1, 2지급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로서 이 사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제1, 2지급행위는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인 6,110,1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,110,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본안전 항변의 요지

① D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, ②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,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.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제1, 2지급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 또한 원고가 제1, 2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제1, 2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원고는, D가 증여에 해당하는 제1, 2지급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.

먼저, 제1, 2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제1항의 인정사실과 을 제1~3호증에 의하면, D가 2018. 8. 26. 피고 B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0,000,000원으로 정하여 H 부동산에 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, D가 2018. 10. 1. F, G에게 H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, D가 2018. 10. 4. 피고 C으로부터 진주시 I아파트를 매매대금 155,000,000원에 매수하여 2018. 11. 27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D의 피고 B에 대한 제1지급행위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, D의 피고 C에 대한

제2지급행위는 위 현대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제1, 2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음으로, 제1, 2지급행위로 인하여 D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는지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H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위 I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제1, 2지급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

D의 제1, 2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, 그로 인하여 D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우진